

“자원순환형 사회를 선도하는”



한국건설자원협회

수신자 각 지회장 및 대표이사
(경유)

참 조

제 목 「산업안전보건법」 하위법령 개정 · 공포 알림



- 고용노동부는 그간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분류되었던 파·분쇄기를 안전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, 검사 주기 등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령(대통령령 제34603호) 및 동법 시행규칙(고용노동부령 제419호)을 개정·공포(시행일 : '24.7.1) 하였습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금번 「산업안전보건법」 하위법령 개정령 등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 구체적인 안전검사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향후 '안전검사 고시'가 개정되는 대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.

□ 주요 개정내용

- **(개정 배경)** 파·분쇄기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검사 대상으로 규정

※ 최근 5년간('17~'22.9) 파·분쇄기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26건 발생

- **(주요 내용)**

구분	주요 내용
안전검사대상기계 (시행령 제78조제1항제15호)	▶ 파·분쇄기를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
안전검사 주기 (시행규칙 제126조제1항제3호)	▶ (최초검사) 파·분쇄기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▶ (정기검사) 최초검사 후 매 2년마다 안전검사 실시

- **(시행일)** '24.7.1부터 시행(단, 파·분쇄기에 대한 안전검사대상 지정 및 검사 주기 등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)

※ 파·분쇄기 설치 시기별 최초 안전검사 시기

파·분쇄기 설치 시기	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
'13.3.1 이전	'23.6.26 ~ '26.12.25
'13.3.1 ~ '23.6.26	'26.6.26 ~ '27.6.25
'23.6.27 ~ '26.6.25	설치 이후 3년 되는 날 기준 6개월 이내

붙임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1부. 끝.

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



06/28

주임 **염경미** 팀장 **권병문** 부장 **강한서** 사무총장 **조정환** 회장 **박하준**

협조자

시행 정책기획부-168 (2024.6.28.) 접수

우 06752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27길 2 (양재동, 일동홀딩스(주)사옥) 3층 / <http://www.koras.org>

전화 02-2046-5923 전송 02-3476-8464 / cped2110@koras.org / 공개